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77호

2023. 4. 2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530호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
- 삼척시 고시 제2023-57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8
- 삼척시 고시 제2023-5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0
- 삼척시 고시 제2023-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66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4
- 삼척시 공고 제2023-683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8
- 삼척시 공고 제2023-68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행정 예고(호산초)—3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3년 4월 21일

삼척시 조례 제1530호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공지

-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 3.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 6.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
 -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3-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길 328-11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208-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길 328-116	20230418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510-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116-55	20230418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노경,산양)복합활용
		이	하	여	백	
7						
8						
9						
10						

삼척시 고시 제2023-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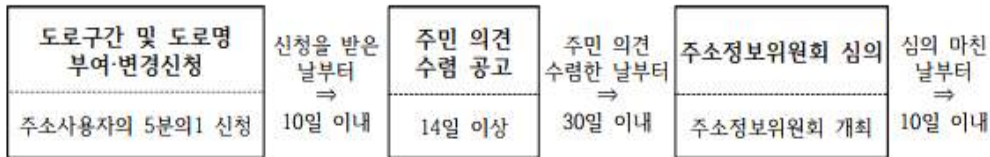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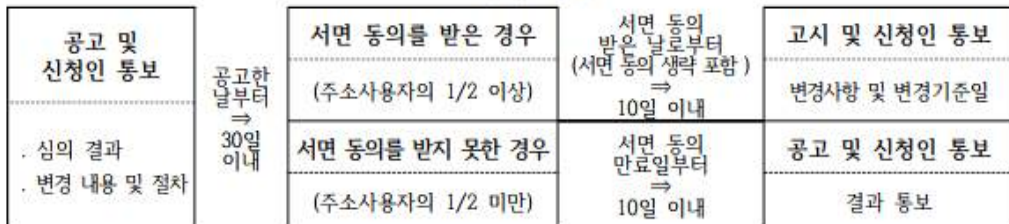
2023. 4. 21.

삼척시장

- 고시일 : 2023. 4. 21.
- 고시방법 : 공보(시보)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변경의 경우>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변경 전 (기준)	나한정길	길	도계읍	흥진리 산 25-7	심포리 산 21	1265	3	93-1→ 93-270	도로구간 종점연장
	변경 후	나한정길	길	도계읍	흥진리 산 25-7	심포리 71	1620	3	93-1→ 93-340	



위치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삼척시 고시 제2023-5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79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87-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79	20230421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124, 125	강원도 삼척시 조비길 227 (조비동)	20230421	신규 부여	20090626	법정동(조비동)명칭 활용
		이	하	여	백	
7						
8						
9						
10						

삼척시 고시 제2023-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멸실 등의 사유로 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안길 55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안길 550		20230421	위치 변경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 복합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66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4. 19. ~ 2023. 5. 4.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5. 8.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정수○
	주소 (대장상주소)	시목리
1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905-2번지 연면적(64.29㎡), 목조, 주택,잠실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영○
	주소 (대장상주소)	추천리
2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03번지 연면적(41.65㎡),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9.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 683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민간위원 위촉대상 반영(안 제4조제3항)
- 취득 및 처분 대상 기준 변경 : 대장가액⇒기준가격(안 제5조제2항)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주민에 공개(안 제7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통일(안 제23조제1항, 제32조제3항)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용 조항 변경(안 제40조제9호)
-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8조제5항, 제38조제3항제1호)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조~제4조, 제12조제3항제2호, 제16조제1항, 제22조제6항, 제35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

다.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반영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3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회계과
 - 전 화 : 033 - 570 - 3275
 - 팩 스 : 033 - 570 - 3135
 - E-mail : tmxjfdl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며”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로 한다.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건설·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지적업무·공유재산 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 및 영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대장가액”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을 “1건당 기준면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삼척시(이하“시”이라한다)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재난”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9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3조 중 “기간”을 “개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를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참작하여 「건축법」상의건폐율이상”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u>관리·운영</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 ----- ----- <u>관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필요한</u> ----- -----</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u>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u></p>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 소속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 미래전략·산림업무의 담당국장과 예산업무·지적업무·공유재산 총괄업무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8명 이내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건설·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지적업무·공유재산 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⑤ (생략)

⑥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 ⑪ (생략)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 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
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 7.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가. 동 지역 소재 : 660제곱미
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 소재 : 99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생략)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생략)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개는 시
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3. ~ 7.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 기준
가격 -----

나. -----

기준가격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
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
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나. (생략)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법 제10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1건당 기준면적-----

가·나.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
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
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삼척시
(이하“시”이라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
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
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시장이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 사용
허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
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
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으-----

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① (생략)
- ② 삭제
-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
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
에 걸쳐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
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2. ~ 4. (생략)
- ④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③ -----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2. ~ 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8. (생략)
- 9.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소득사업 그 밖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에서 정한 면적의 토지(해당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삼척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에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리 지역내로 한다)

- 10. ~ 12. (생략)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기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

- 1. ~ 8. (현행과 같음)
- 9. ----- 제3호 -----

- 10. ~ 12. (현행과 같음)
- 제43조(처분의 제한) -----
기간 -----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부지) -----

 -----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조 례 명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68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행정예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하고 이를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삼 척 시 장

1. 지정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구간

연번	시설명	위 치	연장	
			변경전	변경후
1	호산초등학교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462-12	350m	595m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현황 위치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위치도

